

### III 안전검사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 ● 대한산업안전협회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 대표전화 : 02-860-7180

지회명	전화·팩스번호	관할지역
서울지역 본부	Tel : 02-869-7873 Fax : 02-856-0556	서울특별시 전역
부산지역 본부	Tel : 051-804-5454 Fax : 051-804-6226	부산광역시 전역
대구지역 본부	Tel : 053-710-3100 Fax : 053-710-3114	대구광역시 전역, 경상북도(경산, 영천, 청도, 군위)
인천지역 본부	Tel : 032-363-3300 Fax : 032-363-3301	인천광역시 전역, 강화군
대전지역 본부	Tel : 042-628-2162 Fax : 042-628-2166	대전광역시 전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충청남도(계룡, 공주, 금산, 논산)
광주지역 본부	Tel : 062-943-0156 Fax : 062-943-0159	광주광역시 전역, 전라남도(나주, 담양, 영광, 장성, 함평, 화순, 구례, 곡성)
울산지회	Tel : 052-265-1600 Fax : 052-276-4595	울산광역시 전역
안산지회	Tel : 031-402-3998 Fax : 031-402-4096	경기도(안산, 시흥)
수원지회	Tel : 031-241-2206 Fax : 031-241-0700	경기도(수원, 용인, 화성)
경기서부 지회	Tel : 031-382-9988 Fax : 031-387-4836	경기도(안양, 광명, 과천, 의왕, 군포, 부천, 김포)
경기남부 지회	Tel : 031-665-2416 Fax : 0507-351-7038	경기도(평택, 오산, 안성)
성남지회	Tel : 031-777-9170 Fax : 031-777-9174	경기도(성남, 하남, 이천, 광주, 양평, 여주)
경기북부 지회	Tel : 031-876-0281 Fax : 031-876-0288	경기도(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연천, 포천), 강원 철원
충남북부 지회	Tel : 041-522-4011 Fax : 041-522-4014	충청남도(천안, 아산, 예산, 당진)
강원지회	Tel : 033-734-6201 Fax : 033-735-6203	강원도 전역(철원제외), 경기도 가평
충북지회	Tel : 043-236-0395 Fax : 043-236-0399	충청북도(청주, 청원, 진천, 괴산, 증평, 보은, 옥천, 영동)
충북북부 지회	Tel : 043-855-5171 Fax : 043-855-5174	충청북도(충주, 제천, 음성, 단양)
충남서부 지회	Tel : 041-669-1480 Fax : 041-669-1481	충청남도(영진, 보령, 부여, 서산, 예산, 청양, 태안, 홍성, 서천)
전북지회	Tel : 063-212-4022 Fax : 063-212-4026	전라북도 전역
전남지회	Tel : 061-722-2801 Fax : 061-722-2803	전라남도(여수, 순천, 광양, 여천, 고흥, 보성, 목포, 완도, 무안, 해남, 강진, 영암, 진도, 신안, 장흥)
경북북부 지회	Tel : 054-451-1221 Fax : 054-455-4513	경상북도(구미, 김천, 칠곡군 석적면(3공단), 안동, 예천, 의성, 영양, 청송, 영주, 상주, 문경, 봉화)
포항지회	Tel : 054-277-0163 Fax : 054-281-8650	경상북도(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창원지회	Tel : 055-281-3936 Fax : 055-284-1534	경상남도(마산, 진해, 창원, 창원, 함안, 의령)
경남동부 지회	Tel : 055-387-1343 Fax : 055-387-1344	경상남도(김해, 밀양, 양산)
경남서부 지회	Tel : 055-752-4030 Fax : 055-758-4030	경상남도(진주, 사천, 함천, 거창, 산청, 하동, 함양, 남해, 통영, 거제, 고성)
제주지회	Tel : 064-753-8237 Fax : 064-753-8229	제주도 전역

#### ● 한국안전기술협회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 대표전화 : 1577-7514

지회명	전화·팩스번호	관할지역
서울지회	Tel : 02-894-8504~5 Fax : 02-894-8506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 구리, 포천, 연천, 가평), 강원 북부(춘천, 화천, 양구, 홍천, 인제)
인천지회	Tel : 032-429-8504~5 Fax : 032-429-8506	인천광역시 전역, 경기도(부천, 김포)
경기남부 지회	Tel : 031-268-8513~4 Fax : 031-268-8515	경기도(수원, 화성, 용인)
경기동부 지회	Tel : 031-751-3122 Fax : 031-752-4122	경기도(성남, 이천, 여주, 광주, 하남, 양평) 강원남부(원주, 횡성, 평창, 강릉, 고성, 동해, 삼척, 속초, 양양, 영월, 태백, 정선)
경기서부 지회	Tel : 031-431-3139 Fax : 031-431-0223	경기도(안산, 시흥,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평택지회	Tel : 031-654-8504 Fax : 031-654-8507	경기도(평택, 안성, 오산)
대전지회	Tel : 042-538-3060 Fax : 042-523-9001	대전, 세종, 충남일부(공주, 논산, 계룡, 금산, 보령, 서천, 부여, 청양, 홍성, 서산, 태안)
충남지회	Tel : 041-576-6446 Fax : 041-576-6447	충청남도(천안, 아산, 예산, 당진)
충북지회	Tel : 043-216-8504 Fax : 043-216-8505	충청북도 전역
광주전남 지회	Tel : 062-971-8666 Fax : 062-971-7077	광주광역시 전역, 전라남도(나주, 담양, 화순, 곡성, 장성, 함평, 영광, 구례, 여수, 순천, 보성, 고흥, 광양)
목포 사무소	Tel : 061-464-6640 Fax : 061-464-8077	전라남도(목포, 신안, 진도, 무안,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장흥)
전북지회	Tel : 063-244-3122 Fax : 063-244-4122	전라북도 전역
부산지회	Tel : 051-362-8100 Fax : 051-365-3930	부산광역시 전역
울산지회	Tel : 052-221-4091 Fax : 052-221-4092	울산, 경상북도(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경남지회	Tel : 055-237-4824~5 Fax : 055-237-4827	경상남도(창원, 마산, 진해, 함안, 창녕, 의령, 진주, 사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해, 합천, 통영, 거제, 고성)
경남동부 지회	Tel : 055-364-8181 Fax : 055-364-1661	경상남도(김해, 양산, 밀양)
대구지회	Tel : 053-588-9303~4 Fax : 053-588-9306	대구, 경상북도(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군위, 칠곡(석적면 중리 국가산업 단지 제외))
경북지회	Tel : 054-473-8503~4 Fax : 054-473-8505	경상북도(구미, 김천, 영주, 상주, 문경, 봉화, 안동, 예천, 의성, 영양, 청송, 칠곡(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 대표전화 : 1566-1277

지사명	전화·팩스번호	관할지역
서울지역 본부	Tel : 02-801-0318 Fax : 02-801-0369	서울(강서, 관악,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중구, 동대문, 성동, 중랑, 강남, 강동, 송파, 광진, 마포, 서대문, 은평, 용산, 서초, 동작) 경기(고양, 파주, 하남, 광명, 안양, 군포, 의왕)
서울북부 지사	Tel : 02-948-3337 Fax : 02-948-2936	서울(종로, 강북, 노원, 도봉, 성북) 경기(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포천) 강원(춘천, 철원, 홍천, 양구, 인제, 화천)
경기강원 지역본부	Tel : 031-289-3400-5 Fax : 031-289-3406	경기(수원, 화성, 오산, 과천, 용인, 안성, 평택, 성남, 광주, 양평, 이천, 여주) 강원(영월, 원주, 횡성, 정선, 태백, 평창, 강릉, 고성, 동해, 삼척, 속초, 양양)
경인지역 본부	Tel : 032-425-0685 Fax : 032-427-0687	인천 경기(부천, 시흥, 안산, 강화, 김포)
충청지역 본부	Tel : 042-633-0450 Fax : 042-633-0453	대전, 세종, 충북 충남(계룡, 공주, 금산, 논산, 부여, 서천)
천안지사	Tel : 041-523-0454 Fax : 041-551-0455	충남(천안, 당진, 보령, 서산, 아산, 예산, 청양, 태안, 홍성)
부산경남 지역본부	Tel : 051-811-6500~3 Fax : 051-811-6505	부산, 경남(양산)
대구경북 지역본부	Tel : 053-560-1234 Fax : 053-289-3065	대구, 경북
경남동부 지사	Tel : 055-237-8860 Fax : 055-237-2131	경남(양산 제외)
울산 지사	Tel : 052-275-8775~6 Fax : 052-275-5710	울산
호남지역 본부	Tel : 062-367-8305 Fax : 062-367-7509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산업안전부 (진단, 교육)	Tel : 055-751-0823 Fax : 055-751-0830	전국

#### ● 안전보건공단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 대표전화 : 1544-3089

지역	주요 업무
서울 지역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영등포동2가)</li> <li>Tel : 02)6711-2961~7 / Fax : 02)6711-2969</li> <li>담당업무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li> <li>관할지역 : 서울특별시, 강원도(철원군 제외), 경기도 가평군</li> </ul>
부산 지역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부곡동 64-31)</li> <li>Tel : 051)520-0571~6(1부) / Fax : 051)520-0579</li> <li>Tel : 051)520-0670, 0676(2부) / Fax : 051)520-0579</li> <li>담당업무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li> <li>관할지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li> </ul>
광주 지역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빌딩</li> <li>Tel : 062)949-8781~4 / Fax : 062)949-8768</li> <li>담당업무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li> <li>관할지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li> </ul>
중부 지역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li> <li>Tel : 032)510-0527(1부) / Fax : 032)578-9202</li> <li>Tel : 032)510-0566(2부) / Fax : 032)579-8192</li> <li>담당업무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li> <li>관할지역 : (1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경기도의 한강이북지역(가평군 제외), 강원도 철원군 (2부) 경기도 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도 여주군, 광주시, 이천시, 하남시, 양평군, 성남시</li> </ul>
대구 지역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동인동 2가 50-3) 호수빌딩</li> <li>Tel : 053)609-0564, 0560 / Fax : 053)421-8627</li> <li>담당업무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li> <li>관할지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li> </ul>
대전 지역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문지동 104-7)</li> <li>Tel : 042)620-5644~5 / Fax : 042)632-3619</li> <li>담당업무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li> <li>관할지역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li> </ul>
제주 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4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li> <li>Tel : 064)797-7505 / Fax : 064)797-7518</li> <li>담당업무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li> <li>관할지역 : 제주특별자치도</li> </ul>



#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꼭 받으세요!



# I 안전검사

## 1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 기관 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 2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대상 적용범위

### 1 컨베이어 시스템

대상	적용범위
컨베이어	<p>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p> <p>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li> <li>나.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li> <li>다.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li> <li>라.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li> <li>마. 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li> <li>바. 항만법, 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li> <li>사.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li> <li>아. 밀폐 구조의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li> <li>자. 산업용 로봇 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li> </ul> <p>차.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인 것 또는 구간</p> <p>가.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 또는 구간</p> <p>타.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컨베이어(mobile equipment) 시스템 또는 구간</p> <p>파. 개별 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self propelled overhead conveyor) 시스템 또는 구간</p> <p>※ 검사의 단위구간은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제어구간단위(제어반 설치 단위)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정구간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p>

※ 위 내용에 대한 해설은 안전검사기관 홈페이지(11번 내용 참조) 자료실 게시물(해설서) 참조

## 2 산업용 로봇 셀

대상	적용범위
산업용 로봇	<p>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p> <p>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li> <li>나.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li> <li>다. 최대 동작영역이 로봇 중심축으로부터 0.5m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li> <li>라. 설비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셀</li> <li>마. 재료 등의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셀</li> <li>바.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정상운전 중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된 셀</li> <li>사. 로봇 주위 전 둘레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방책의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li> <li>아. 연속적으로 연결된 셀과 셀 사이에 인접한 셀로서, 셀 사이에는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고, 셀 사이를 제외한 측면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li> </ul>

※ 위 내용에 대한 해설은 안전검사기관 홈페이지(11번 내용 참조) 자료실 게시물(해설서) 참조

## 3 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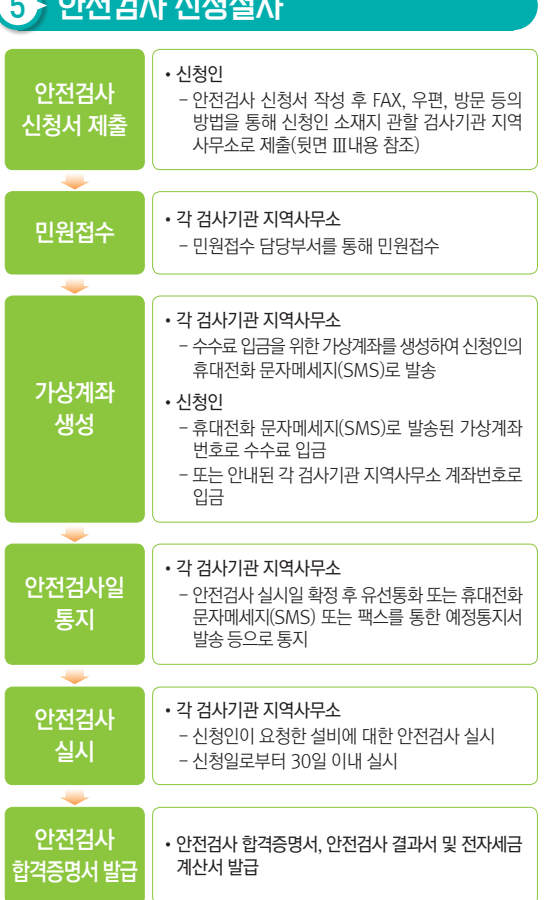
설비 설치일	안전검사 기한
2017. 10. 28. 이전 설치·사용 설비	2018.12. 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2017. 10. 29. 이후 설치·사용 설비	설비 설치일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 4 검사 수수료

안전검사대상	안전검사 수수료	
컨베이어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20m이하	58,000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20m초과	58,000원에 20m초과한 10m마다 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용 로봇	셀내 로봇 1대	66,000
	셀내 로봇 1대 초과	66,000원에 1대 초과한 1대마다 1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5호) ※ 부가세 별도

## 5 안전검사 신청절차



## 6 신청서 양식

※ 안전검사 신청서 양식은 안전검사기관 홈페이지(11번 내용 참조) 자료실 게시물 참조

## 7 과태료

구분	과태료	관련근거	비고
안전검사 미실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사용종지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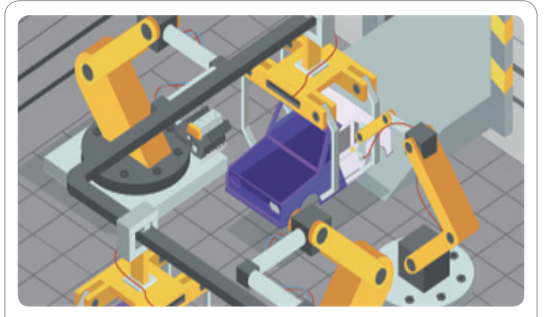
## 8 주요 검사항목

### 1 컨베이어 시스템



주요검사항목		
• 일반구조	• 덮개 또는 울	• 통로
• 벨트컨베이어 안전장치	• 트롤리컨베이어 안전장치	• 롤러컨베이어 안전장치
• 스크류컨베이어 안전장치	• 버킷컨베이어 안전장치	• 접지
• 비상정지장치		

### 2 산업용 로봇 셀



주요검사항목		
• 운전모드선택	• 자동, 수동운전모드	• 펜던트제어
• 협동운전 요구사항	• 로봇 시스템 배치설계	• 로봇 시스템 정지 기능
• 수동 리셋, 기동과 재기동	• 보호영역 및 방책 등	• 감응형 방호장치
• 접지	• 비상정지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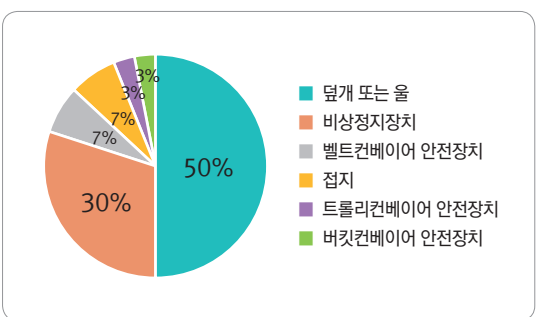
※ 위 내용에 대한 해설은 안전검사기관 홈페이지(11번 내용 참조) 자료실 게시물(해설서) 참조

## 9 주요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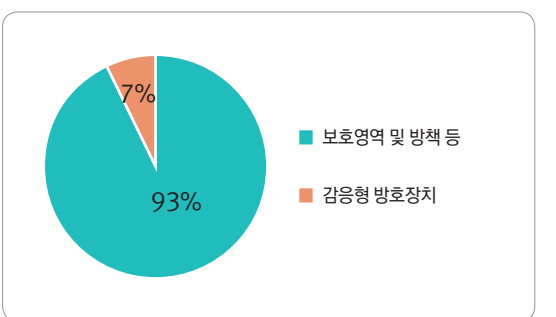
※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관련 주요 질의응답은 안전검사기관 홈페이지(11번 내용 참조) 자료실 게시물(문답집) 참조

## 10 주요 불합격 내용

### 1 컨베이어 시스템



### 2 산업용 로봇 셀



## 11 안전검사기관 현황 및 홈페이지

대한산업안전협회	http://www.safety.or.kr (☎ 02-860-7180)
한국안전기술협회	http://www.korsta.or.kr (☎ 1577-751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http://www.koelsa.or.kr (☎ 1566-127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miis.kosha.or.kr (☎ 1544-3089)

※ 각 검사기관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안전검사 관련 자료가 게시되어 있음  
 ※ 게시 자료  
 - 본 리플렛 파일  
 - 안전검사 적용범위 및 기준 해설서  
 - 안전검사 실시에 따른 주요 질의응답 문답집  
 - 안전검사 신청서 양식

# II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1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시 안전검사 면제

## 2 인정절차 및 방법



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신청서와 관련서류 2부를 첨부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② 안전보건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15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  
 ③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신청한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 받은 경우 사업주는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함

■ 자율검사 프로그램인정에 따른 검사방법  
 - 사업주 스스로 검사 실시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실시

## 3 업무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4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에 따른 검사주기

■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

## 5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유효기간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인정

## 6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자율검사프로그램 대상 적용범위

■ 안전검사 대상 적용범위(1의 2번 내용)와 동일